

2025년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

한국연구재단에서는 『2025년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』 신규과제 선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활용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2일

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

1. 사업목적

- 연구개발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의 고위 정책 관리자, 산업체의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재직기간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
- 지방에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학문 분야를 교육,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 견인

2. 사업내용

지원 조건 (필수)

- (대학)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 전담(매 학기 1강좌 이상)
- (교육훈련기관) 활용기관에서 1년 30강의(온라인 강의 포함) 이상 또는 교재개발 전담
- (연구소 및 지역개발)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,000만원/년 이상의 사업(연구과제, 지역특화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)에 참여하여 주 16시간 이상 근무

□ 지원내용

- (지원규모) 80과제 내외
- (지원금액) 최대 3년(2+1)이내* 연구장려금 300만원 이내/월** 지원
 - * 2차년도 기간 내 단계평가 후, 차년도 진입 여부 결정
 - ** 활용기관에서 월 100만원 이상 매칭부담 시, 재단에서 그 차액을 지급(평가시 우대)
- (지원부문) 교육 및 연구 부문 / 지역개발 부문

구 분	활용기관 및 수행 업무
①교육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대상) 지방소재 4년제 대학(원), 4대 과기특성화대학, 사관학교* 및 경찰대학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(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제4조 제1항제1호) (수도권 소재 제외기관 예외 사항)· (지원조건)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매 학기 정규강의를 1강좌 이상 전담
②연구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대상) 지방소재 「공무원인재개발법」 및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침에서 정하는 기관(이하 '교육훈련기관') ⇒ 대상기관 :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,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· (지원조건) 연 30강의(온라인 강의 포함) 이상 또는 교재개발 전담
③지역개발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대상) 지방소재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(연구소)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기관· (지원조건) 연구과제 수행* * 사업비 1,000만원 이상/연, 참여시간 16시간 이상/주

※ 관련: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제4조

3. 신청자격

□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 <①, ②,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>

- ① 활용개시일('25.9.1.) 기준 만 65세 미만*인 자

* 1960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

- ② 활용개시일('25.9.1.) 기준으로 퇴직 후 3년* 이내인 자

* 단,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 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(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요건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 판단)

③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○ 교육 및 연구 부문

- 「국가공무원법」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
- 「국가공무원법」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“가등급” 이상 재직한 사람
- 「군인사법」상 장성(將星)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
- 「경찰공무원법」상 치안총감,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
- 「소방공무원법」상 소방총감,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
-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
 - 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(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)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의 상근 임원. 다만,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 임원이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
 - 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(기관 내 최상위 직급)으로 근무한 사람.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
 - . 종업원^{*}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(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)
 - *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, 기업신용정보회사 등 공시자료 기준
 - * 산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 총 인원수이며, 파견근로자, 일용직(아르바이트 등)은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음

○ 지역개발 부문

- 「국가공무원법」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사람. 다만,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.
- 「군인사법」상 장성(將星)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
-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중견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)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의 상근 임원. 다만,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 임원이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포함
 - 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,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(기관 내 최상위 직급)으로 근무한 사람. 다만,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
 - .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15년 이상 근무하고, 연구관 또는 지도관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
 - . 연구원 30인 이상의 민간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(부장급)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
 - . 종업원^{*} 50인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
 - *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, 기업신용정보회사 등 공시자료 기준
 - * 산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 총 인원수이며 파견근로자, 일용직(아르바이트 등)은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음

< 유의사항 >

1.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2. 활용기간 중 타 기관에서 ①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, ②비상근직이어도 연 보수가 3,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3. 전문경력인사의 활용기간은 사업 신청 시, 활용기관의 자체규정(예시: 정년 등) 및 총 활용기간(최대 3년)을 고려하여 신청

□ 활용기관 요건

① 교육 및 연구 부문

○ 대학 및 대학원대학

-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4년제 국·공·사립대학
-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지방 분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의 연구기관 중 과기특성화대학
-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

○ 교육훈련기관

구분	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교육훈련기관	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교육훈련이 목적인 기관
신청가능 활용기관	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	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

○ 연구소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(연구소)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

② 지역개발 부문

- 수도권*을 제외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(광역자치단체)
*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서울·경기·인천

<유의사항>

1. 수도권지역(서울, 인천, 경기)에 소재하는 기관(대학·연구소, 교육훈련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)은 활용기관에서 제외
※ 다만, 특수한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고등교육기관이 수도권에만 소재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기관이 될 수 있음
2. 기관별 최대 활용가능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[별첨]의 기관별 활용가능인원 참조
※ 단, 활용가능인원이 있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
3. 지역개발부문의 경우, 신청선정결과 및 기타 사업관련 문서는 사업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(도 또는 광역시)로 배부되오니 관련 부서의 사전 협조 필수
※ 사업 신청 시, 광역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요망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(공고기간) 2025.4.22. ~ 5.26. (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)
- (접수기간) 2025.4.23. ~ 5.26. 18:00까지
※ 공문 제출 및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ecm.nrf.re.kr>)에 작성 및 등록 완료된 시점 기준
- (공고방법) 재단 홈페이지 등
※ 대학, 공공기관(연구소), 지방자치단체(광역), 과학기술관련단체(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) 공문 발송 및 e-알리미 등 추가 안내 예정
- (신청방법)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ecm.nrf.re.kr>)상 지원서 작성 및 공문 제출
※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은 상위 공공기관을 활용기관으로 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인원 규모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므로, 상위 공공기관의 명칭을 공문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※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기초자치단체(당해 출연기관 포함) 활용인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
※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ecm.nrf.re.kr>) 작성 및 등록 완료 후, 제출완료 공문이 재단으로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(기한 내 접수 미완료 시 신청 불가)
※ 접수마감 이후 신청서 수정, 자료 변경 또는 추가 제출 불가
※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작성시 출신기관, 성명 등 블라인드 제출 요망(매뉴얼 15쪽 참조)

○ 제출서류

- (온라인 서류접수) 신청 공문을 제외한 모든 파일은 사업관리시스템 (<https://ecm.nrf.re.kr>)에 입력 및 제출

구분	제출자료	제출방법	비고
1	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	시스템 입력	별도 양식[별첨1] 참조
2	활용계획서	시스템 입력	<u>일부 항목 Blind 작성</u>
3	활용계획*	파일 업로드	별도 양식[별첨2] 참조
4	학력·경력·업적서	시스템 입력	-
5	학력·경력증명서	파일 업로드	-
6	산업체 등기부등본 사본	파일 업로드	산업체 경력자 중 등기임원
7	해당 기관 직제규정 (최고직급 명시된 부분)	파일 업로드	최종경력이 공공기관일 경우에 한함

* 활용계획(3) 제출 시, 활용계획서(2) 합본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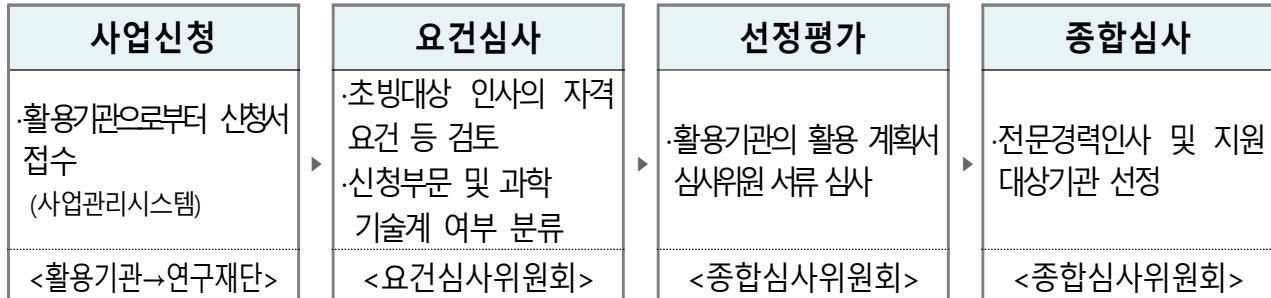
- (공문 제출)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사실 제출(신청인사명 기재)
※ 전자문서 유통 불가 시 해당 공문을 이메일(ecm@nrf.re.kr)로 제출

<사업 신청시 주의사항>

1.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**다시 지원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2. 활용인사가 **부패행위 징계내역**이 있거나 **형사처벌(금고 이상의 형)**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**신청 불가**(활용기관에서는 사업 신청 전 해당사항 여부 확인 필요)

5. 선정방법 및 절차

□ 평가절차

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활용목적의 명확성	활용내용의 충실성	초빙인사의 부합성	교육, 연구 또는 사업의 내실화	활용 분야 진통 기여도	합계
배점(점)	15	20	30	15	20	100

<선정평가 및 종합심사 안내사항>

- 신청서 평가 시, 연구장려금을 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대 할 수 있으며, 우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(취득점수의 3% 가점 부여)
⇒ (지침 제14조제2항)
- 심사위원회는 신규 과제 선정 시 **총선정자 중 50% 이상**을 과학기술계 전문경력 인사로 선정함. 다만, 전체 신청자 중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 신청자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⇒ (지침 제15조제1항)
- 전문경력인사의 신규 선정 시 **출신분야별 선정자의 수가 전체 선정자 수의 15%를 초과해서는 안됨**(출신분야별 구분은 지침 제15조제3항 참조)
⇒ (지침 제15조제2항)
-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**

6. 향후 일정

추진 일정	추진 내용
2025.4.29.(화) 15:00	설명회 개최(한국연구재단 연구관 대강당)
2025. 6~7월	선정평가 실시
2025. 7월 초	종합심사위원회 심의
2025. 7월 중	선정결과 공고
2025. 7월 이후	후속조치 추진(협약체결 등) 및 사업개시(2025.9.1.)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7. 적용규정

- 「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」 (한국연구재단 내규)

별첨 1.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양식 1부

- 활용계획 작성양식 1부
-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1부
- 접수매뉴얼(추후 접수안내 시 첨부) 1부
- 기관별 활용가능인원(TO) 현황('24.9. 기준) 1부